

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 개요

□ 제도 개요('18.2월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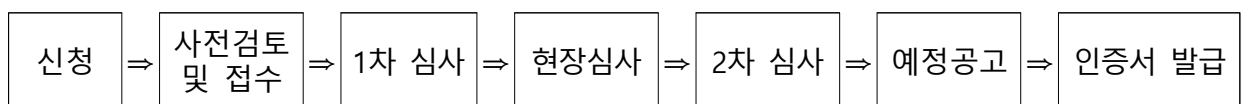
- 목적: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·보급 지원
- 근거: 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6조
- 인증형식: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,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
- 인센티브: 국가·지방 수의계약, 조달우수제품지정 심사 가점(1점)
중기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등

□ 주요 내용

- 인증대상: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*

- * ①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
- ②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
- ③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

- 인증절차: 연 2회 신청을 받아, 3차례 인증심사 후 인증서 발급



- 1차 심사 :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·기술우수성 등 심사
- 현장심사 : 지속적 생산·관리 가능성 및 품질경영체계 등 심사
- 2차 심사 :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 심사

- 인증표시: 제품,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마크 표시

- 사후관리: 유효기간(3년) 내 1회 이상 사후관리 점검,

필요시 수시·전수 점검 등 인증제품 품질유지 여부 지속적 관리

